10 석유화학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급성전골수성백혈병

 성별
 남성
 나이
 49세
 직종
 석유화학공장 작업자
 직업관련성
 낮음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91년 □사업장 공무부 계전과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공장의 설비 수리 및 계측기 정비 등의 수리 업무를 하였으며, 이후로 2015년까지 BPA·MIBK 필드에서 공장설비 관리 및 모니터링, 유기용제 샘플링 및 분석 업무를 맡았다. 2017년 4월 중순부터 이유 없이 멍이 많이 발생하였고, 5월 10일 경부터 구강출혈, 혈뇨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수행한 혈액 검사에서 혈소판수치 저하 및 백혈구 수 상승 소견으로, 2017년 5월 12일 대학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. 근로자는 화학공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, 직무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백혈병이 발병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는 □사업장 입사 이후 공장에서 약 1년 3개월간 공무부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계측기의 점검 및 수리를 하는 계전업무를 수행하였다. 계전업무 수행 이후로 약 12년 동안 BPA 및 MIBK 제조공장에서 필드맨(Field Man)으로, 휴직 전 까지 약 1년 8개월간 보드맨(Board Man)으로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평소 대기 시간이나 현장 순회 시에는 안전모, 안전화를 착용하였으며, 시설 정비 및 밸브 확인 시 추가로 보호 장갑을 착용하였다. 분석업무 수행 시에는 별도의 호흡용보호구 착용은 하지 않으며, 분석실 내부에 공조설비(전체환기) 및 흄후드(국소배기장치)가 설치되어 가동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. 화학공정 특성상 배관에 의해 폐쇄형(closed type)으로 공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화학적인자의 노출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BPA 및 MIBK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원료 및 부산물에 발암(백혈병)의 원인물질인 벤젠이 불순물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어 원료 및 부산물에 대한 벌크시료를 채취하여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6년 12월부터 만성적 피로와 무기력증 있었으나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 고 2017년 5월부터 멍이 잦고 구강출혈, 혈뇨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여 수행한 혈액 검사 에서 혈소판수치 저하 및 백혈구 상승 소견으로 백혈병 의심되어 2017년 5월 12일 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골수검사 및 추가 혈액검사를 수행하여 급성 전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 았으며 비정상핵형은 관찰되지 않았다. 근로자 진술 및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, 근 로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제외하고 특이 질환 없었고 담배는 피운 적 없다고 하였다. 음 주는 한 달에 1회, 소주 반병정도 하였고, 백혈병과 관련된 특이 집화은 없었으며 가족력 으로 어머니 고혈압 외에는 없다고 응답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만 49세가 되던 2017년 5월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 받았다. 근 로자는 만 23세인 1991년 10월부터 □사업장에서 1년 2개월간 공장의 설비 수리와 계측 기 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로 약 21년간 설비 정상작동 유무 확인을 위한 현장순회 점 검(패트롤), 원료·중간생성물·제품에 대한 샘플링, 분석시료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 다. 급성전골수성백혈병과 관련 있는 직업·환경적 요인으로는 벤젠, 포름알데히드, 1,3-부 타디엔, 고무생산, 토륨-232, 인-32, 스트론튬-90, 엑스선 및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근로자는 샘플링, 분석시료 전 처리 시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 으며, 원료와 부산물에 대한 벌크시료 분석 결과 벤젠은 검출 되지 않았다. 사업장에서 제 출한 1995년 당시 원료물질(아세톤)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에서도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.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